

지방세법

[총평] 2019년 지방직 9급 지방세법의 출제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기본법 7문항, ② 지방세 징수법 1문항, ③ 지방세법 10문항,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2문항. 또한, 본 강사의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상)수준의 문제가 2문항, (중)수준의 문제가 7문항, (하)수준의 문제가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중간실력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난이도로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당히 지엽적인 종교단체에 대한 개별감면규정이 출제가 되었고, 지방소득세에서는 국세를 공부하지 아니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준비하기 힘든 주제의 지엽적 규정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준비가 많이 된 학생들에게는 의외로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시험이었다고 판단된다. 지문의 길이는 기존의 시험 등과 비교하여 다소 길지 않은 단순규정이 위주가 되었으므로 시간소요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회 시험회차가 늘어나면서 공통적으로 생략해야 할 시험 준비의 방향일 것이지만, 좀 더 기본기에 충실하고, 원문 규정을 기준으로 한 문제풀이의 적응훈련 과정이 요구되는 시험으로 그 경향이 정립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단기고시학원 세법전임 이진욱세무사)

문 1.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

- ①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 ② 국가기관이 조세징수를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적용도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문 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해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지법 제7조 ④). 즉, 해당 변경 등으로 가액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 ④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반출의제).

문 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하)

- 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②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 ③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④ 래저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②

해설> 주민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균등분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문 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0.8%)로 한다.

문 6.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7.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④

해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는 위탁징수 성격으로서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 납입 불이행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문 8. 지방세특별재정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감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문 9.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

-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해설>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문 1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④ 납세자는 범죄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 12.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하)

-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 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 ③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④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제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 ④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 문 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실질과세).
-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문 14.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 문 15.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하)
- ① 주민세
- ② 지방교육세
- ③ 등록면허세
- ④ 지방소득세

정답> ②
해설>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와 관련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문 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 ②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은 일정세율로서 조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다.

- 문 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 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 ②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③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 ④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정답> ①
해설>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문 1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②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③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된다.
 -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③
해설> 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문 1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①
해설>

- ②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00,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문 20.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법인 설립 시 4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이다.
 - ② 법인 설립 시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 ③ 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

다.

- ④ 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이다.

정답> ④
해설>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비율(55%)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비율(60%)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